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공고

1.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사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2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료 요청 등에 의거하여 대학평의위원회는 회의 실시 후 회의가 있는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에 회의록을 공개하는 준수 사항에 따라 상위법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대학평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2. 규정 주요 개정사항

▪ 규정명 :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장 회의 제9조(회의록) ① 평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9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평의위원회는 해당 회의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회 회의록을 대학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평의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평의위원회는 제3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⑤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은 평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아니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2 (대학평의위원회 자료 요청 등)에 의거하여 ↓ 대학평의위원회 제9조(회의록) 항 추가사항

해당규정 전문 개정사항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 정관 제19조3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제6호는 자문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안에 관한사항
2. 대학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장 조직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회가 선출한 평의원 4인
2. 직원회가 선출한 평의원 2인
3. 학생회가 선출한 평의원 1인
4. 교외 평의원 4인(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문 및 인사)
5. 조교회가 선출한 평의원 1인

②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③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제4조(위촉) ①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교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회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 학생회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원)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6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7조(회의)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평의원회는 해당 회의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회 회의록을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평의원회는 제3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⑤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은 평의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아니된다. <개정 2025. 00. 00 요청>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간사는 기획조정처 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09.25.><개정 2021.01.21.>

③ 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4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1. **제14조(개방이사 추천)** ① 의장은 법인정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5조(개방이사 후보자) ① 개방이사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②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천 시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 개방이사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17조(개방감사 추천) 의장은 법인정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감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추천위원회에서 법인에 대상인원의 단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추천위원회 조직과 구성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예원예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2.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1.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4.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5. ③ 추천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6. ④ 그 밖에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9조(내규) 평의위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2007. 2. 12)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 제4조제1항의 교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교수를 대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2) 제4조제2항의 직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노동조합 및 직원을 대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부 칙(2007. 9.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2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2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00. 0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